「근로조사법」

- 국 가 · 지 역: 대만
- 제 정 일: 1931년 1월 31일
- 개 정 일: 2020년 5월 22일
- 공 포 일: 2020년 6월 10일
- 시 행 일: 2020년 6월 10일

제 1 장 총칙
제 2 장 근로조사기구
제 3 장 근로조사원
제 4 장 근로조사대행기구와 근로조사대행원
제 5 장 조사 절차
제 6 장 벌칙
제 7 장 부칙

원문	번역문
第一章 總則	제 1 장 총칙
第一條 為實施勞動檢查，貫徹勞動法令之執行、維護勞雇雙方權益、安定社會、發展經濟，特制定本法	제 1 조 근로조사를 실시하고, 노동법령을 성실하게 집행하고, 사용자와 근로자 양쪽 모두의 권익을 보호

。	하고, 사회 안정·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이 법을 특별히 제정한다.
第二條 本法所稱主管機關：在中央為勞動部；在直轄市為直轄市政府；在縣（市）為縣（市）政府。	제 2 조 이 법에서 말하는 주무기관은 중앙에서는 노동부이고, 직할시에서는 직할시 정부이다. 현（시）에서는 현（시）정부이다.
第三條 本法用詞定義如下： 一、勞動檢查機構：指中央或直轄市主管機關或有關機關為辦理勞動檢查業務所設置之專責檢查機構。 二、代行檢查機構：指由中央主管機關指定為辦理危險性機械或設備檢查之行政機關、學術機構或非營利法人。 三、勞動檢查員：指領有勞動檢查證執行勞動檢查職務之人員。 四、代行檢查員：指領有代行檢查證執行代行檢查職務之人員。	제 3 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조사기구: 중앙 또는 직할시 주무기관이나 관계 기관이 근로조사 업무 처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사 전담 기구를 말한다. 2. 근로조사대행기구: 중앙 주무기관이 위험한 기계나 설비 검사를 대행하도록 지정하는 행정기관·학술기구·비영리법인을 말한다. 3. 근로조사원: 근로조사증을 소지하고 근로조사 직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조사대행원: 조사대행증을 소지하고 근로조사대행 직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第四條 勞動檢查事項範圍如下：	제 4 조 근로조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一、依本法規定應執行檢查之事項。 二、勞動基準法令規定之事項。 三、職業安全衛生法令規定之事項。 四、其他依勞動法令應辦理之事項。	1. 이 법에서 근로조사를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사항 2. 근로기준 법령에서 근로조사를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사항 3. 산업 안전 및 위생 법령에서 근로조사를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사항 4. 그 밖의 노동 법령에서 근로조사를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사항
第二章 勞動檢查機構	제 2 장 근로조사기구
第五條 勞動檢查由中央主管機關設勞動檢查機構或授權直轄市主管機關或有關機關專設勞動檢查機構辦理之。勞動檢查機構認有必要時，得會同縣（市）主管機關檢查。	제 5 조 근로조사는 중앙 주무기관이 설치하는 근로조사기구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직할시 주무기관 또는 관련 기관이 설치하는 근로조사 전담기구가 실시한다. 근로조사기구가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경우 현 (시) 주무기관과 함께 조사할 수 있다.
前項授權之勞動檢查，應依本法有關規定辦理，並受中央主管機關之指揮監督。	앞 항에서 말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근로조사는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중앙 주무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勞動檢查機構之組織、員額設置基準，依受檢查事業單位之數量、地區特性，由中央主管機關擬	근로조사기구의 조직·정원 수의 설치 기준은 조사를 받는 사업장의 규모·지역 특성에 따라 중앙

訂，報請行政院核定之。	주무기관이 정하여 행정원에 서면으로 보고하면 심사한 뒤에 정한다.
第六條 中央主管機關應參酌我國勞動條件現況、安全衛生條件、職業災害嚴重率及傷害頻率之情況，於年度開始前六個月公告並宣導勞動檢查方針，其內容為： 一、優先受檢查事業單位之選擇原則。 二、監督檢查重點。 三、檢查及處理原則。 四、其他必要事項。 勞動檢查機構應於前項檢查方針公告後三個月內，擬定勞動監督檢查計畫，報請中央主管機關核備後實施。	제 6 조 중앙 주무기관은 우리나라 근로조건 현황·산업 안전 및 위생 조건·산업재해 강도율·상해 빈도율 상황을 참작하여야 하며, 해당년도가 시작되기 6 개월 전에 공고하고 근로조사 방침을 지도하여야 한다. 근로조사 방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장에 대한 조사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2. 조사 중점을 감독한다. 3. 조사 및 처리 원칙을 준수한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다. 근로조사기구는 앞 항의 조사 방침을 공고한 뒤 3 개월 안에 근로감독조사 계획을 정하고 중앙 주무기관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은 뒤에 실시한다.
第七條 勞動檢查機構應建立事業單位有關勞動檢查之資料，必要時得請求有關機關或團體提供。	제 7 조 근로조사기구는 사업장에 관련된 근로조사에 대한 자료를 마련하여야 하고, 필요시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對於前項之請求，除其他法律有特別規定者外，有關機關或團體不得拒絕。 中央主管機關應每年定期公布勞動檢查年報。	그 밖의 법률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 기관이나 단체는 앞 항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앙 주무기관은 매년 근로조사 연보를 정기적으로 공포하여야 한다.
第三章 勞動檢查員	**제 3 장 근로조사원**
第八條 勞動檢查員之任用，除適用公務人員有關法令之規定外，其遴用標準由中央主管機關定之。	**제 8 조** 공무원 관련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조사원의 채용에 관한 인용 기준은 중앙 주무기관이 정한다.
第九條 勞動檢查員應接受專業訓練。 前項訓練辦法，由中央主管機關定之。	**제 9 조** 근로조사원은 전문훈련을 받아야 한다. 앞 항에서 말하는 전문훈련 방법은 중앙 주무기관이 정한다.
第十條 勞動檢查員由勞動檢查機構依其專長及任務之特性指派，執行第四條所定之職務。	**제 10 조** 근로조사원은 근로조사기구가 전문기술 및 임무 특성에 따라 파견하고 제 4 조에서 정하여진 직무를 집행한다.
第十一條 勞動檢查員不得有左列行為：	**제 11 조** 근로조사원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為變更、隱匿或捏造事實之陳報。 二、洩漏受檢查事業單位有關生產技術、設備及經營財務等秘密；離職後亦同。 三、處理秘密申訴案件，洩漏其申訴來源。 四、與受檢查事業單位發生不當財務關係。	1. 사실을 변경·은닉·위조하여 보고하는 행위 2. 근로조사를 받는 사업장에 관련된 생산기술·설비 및 경영 재무 사항 등의 영업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이직한 뒤에 해당 영업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3. 영업비밀 고소 사건의 고소 출처를 누설하는 행위 4. 근로조사를 받는 사업장과 부당한 재무 관계를 형성하는 행위
勞動檢查員有違法或失職情事者，任何人得根據事實予以舉發。	근로조사원이 위법한 행위를 하거나 실직할만한 상황을 발생시키는 경우 누구든지 사실에 근거하여 신고할 수 있다.
第十二條 勞動檢查員與受檢查事業單位有利害關係者，應自行迴避，不得執行職務，其辦法由中央主管機關定之。	**제 12 조** 근로조사원과 근로조사를 받는 사업장이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회피를 요청하고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피 방법은 중앙 주무기관이 정한다.
第十三條 勞動檢查員執行職務，除左列事項外，不得事先通知事業單位： 一、第二十六條規定之審查或檢查。	**제 13 조**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조사원의 직무 집행을 근로조사를 받는 사업장에 미리 알려서는 아니 된다. 1. 제 26 조에서 규정된 심사 또는 조사인 경우

二、危險性機械或設備檢查。 三、職業災害檢查。 四、其他經勞動檢查機構或主管機關核准者。	2. 위험한 기계나 설비를 조사하는 경우 3. 산업재해 조사인 경우 4. 근로조사기구 또는 주무기관이 심사·비준한 그 밖의 경우
第十四條 勞動檢查員為執行檢查職務，得隨時進入事業單位，雇主、雇主代理人、勞工及其他有關人員均不得無故拒絕、規避或妨礙。 前項事業單位有關人員之拒絕、規避或妨礙，非警察協助不足以排除時，勞動檢查員得要求警察人員協助。	제 14 조 근로조사원은 근로조사 직무를 집행하는 때에 사업장에 수시로 출입할 수 있으며, 사용자·사용자의 대리인·근로자·그 밖의 관계자는 누구든지 이유없이 근로조사원을 거부·회피·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앞 항에서 말하는 사업장 관계자가 근로조사원을 거부·회피·방해하여 경찰 없이는 협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조사원은 경찰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第十五條 勞動檢查員執行職務時，得就勞動檢查範圍，對事業單位之雇主、有關部門主管人員、工會代表及其他有關人員為左列行為： 一、詢問有關人員，必要時並得製作談話紀錄或錄音。 二、通知有關人員提出必要報	제 15 조 근로조사원은 직무를 집행하는 때에 근로조사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사용자·관련 부서의 담당자·노동조합대표 및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 1. 관계자에게 질의하고, 필요시 대화를 기록하거나 녹음하는 행위 2. 관계자에게 필요한 보고·기

告、紀錄、工資清冊及有關文件或作必要之說明。	록·임금 대장·관련 문서 등을 제출하도록 통지하거나, 필요한 설명을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三、檢查事業單位依法應備置之文件資料、物品等，必要時並得影印資料，拍攝照片、錄影或測量等。	3. 근로조사 사업장이 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는 문서 자료·물품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자료를 복사 또는 사진·영상으로 촬영하거나 측정하는 등의 행위
四、封存或於掣給收據後抽取物料、樣品、器材、工具，以憑檢驗。	4. 자재·견본·부품·도구를 밀봉하거나 압수한 뒤 검사를 위하여 일부 추출하는 행위
勞動檢查員依前項所為之行為，事業單位或有關人員不得拒絕、規避或妨礙。	근로조사원이 앞 항에서 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장 또는 관계자는 거부·회피·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勞動檢查員依第一項第三款所為之錄影、拍攝之照片等，事業單位認有必要時，得向勞動檢查機構申請檢視或複製。	근로조사원이 제 1 항제 3 관에서 말하는 사진·영상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때에 사업장이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경우 근로조사기구에 그 촬영본을 조회하게 해주거나 복사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對於前項事業單位之請求，勞動檢查機構不得拒絕。	근로조사기구는 앞 항에서 말하는 사업장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十六條	제 16 조
勞動檢查員對違反勞動法律規定之犯罪嫌疑者，必要時，得聲請檢察官簽發搜索票，就其相關物件、處所執行搜索、扣押。	근로조사원이 노동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필요시 검찰관이 수색영장을 발부하여 관련 문서·장소에 대한

	수색·압류를 집행할 수 있다.
第四章 代行檢查機構與代行檢查員	제 4 장 조사대행기구와 조사대행원
第十七條 中央主管機關對於危險性機械或設備之檢查，除由勞動檢查機構派勞動檢查員實施外，必要時亦得指定代行檢查機構派代行檢查員實施。	제 17 조 근로조사기구가 근로조사원을 파견하여 위험한 기계 및 설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앙 주무기관은 필요시 조사대행기구를 지정하여 조사대행원을 파견하고 그와 같은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第十八條 代行檢查機構之資格條件與所負責任、考評及獎勵辦法，暨代行檢查員之資格、訓練，由中央主管機關定之。	제 18 조 조사대행기구의 자격 조건과 책임·평가·장려 방법, 조사대행원의 자격·훈련은 중앙 주무기관이 정한다.
第十九條 代行檢查業務為非營利性質，其收費標準之計算，以收支平衡為原則，由代行檢查機構就其代行檢查所需經費列計標準，報請中央主管機關核定之。	제 19 조 조사대행업무는 비영리 성질이며, 그 비용 기준에 대한 계산에는 수지균형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조사대행기구는 조사대행에 쓰인 경비를 항목별로 기준에 따라 계산하고, 중앙 주무기관에 심사·결정을 요청한다.
第二十條 代行檢查機構擬變更代行檢查業	제 20 조 조사대행기구는 조사대행업무를

務時，應檢附擬增減之機械或設備種類、檢查類別、區域等資料，向中央主管機關申請核准。	변경하려는 경우 늘리거나 줄이려는 기계 및 설비의 종류·조사 유형·구역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중앙 주무기관에 심사·비준을 요청하여야 한다.
第二十一條 第十一條及第十二條之規定，於代行檢查員適用之。	제 21 조 제 11 조 및 제 12 조 규정을 조사대행원에게 적용한다.
第五章 檢查程序	제 5 장 조사 절차
第二十二條 勞動檢查員進入事業單位進行檢查時，應主動出示勞動檢查證，並告知雇主及工會。事業單位對未持勞動檢查證者，得拒絕檢查。	제 22 조 근로조사원은 사업장에 들어가서 조사를 진행하는 때에 먼저 근로조사증을 제시하여야 하고 사용자와 노동조합에 근로조사 실시를 고지하여야 한다. 근로조사원이 근로조사증을 소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장은 근로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勞動檢查員於實施檢查後應作成紀錄，告知事業單位違反法規事項及提供雇主、勞工遵守勞動法令之意見。	근로조사원은 근로조사를 한 뒤에 그 내용을 기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장이 법규를 위반한 사항을 고지하고 사용자 및 근로자가 노동 법령을 준수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第一項之勞動檢查證，由中央主管機關製發之。	제 1 항에서 말하는 근로조사증은 중앙 주무기관이 제작하여 발급한다.

第二十三條 勞動檢查員實施勞動檢查認有必要時，得報請所屬勞動檢查機構核准後，邀請相關主管機關、學術機構、相關團體或專家、醫師陪同前往鑑定，事業單位不得拒絕。 第十一條第一項第二款及第十二條之規定，於前項陪同人員適用之。	제 23 조 근로조사원이 근로조사를 하는 때에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경우 소속 근로조사기구에 심사·비준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뒤 관련 주무기관·학술기구·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사를 동반하여 감정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장은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앞 항에서 말하는 감정 실시를 위하여 동반하는 자에게 제 11 조제 1 항제 2 관 및 제 12 조 규정을 적용한다.
第二十四條 勞動檢查機構辦理職業災害檢查、鑑定、分析等事項，得由中央主管機關所屬勞動部勞動及職業安全衛生研究所或其他學術、研究機構提供必要之技術協助。	제 24 조 근로조사기구는 산업재해 조사·감정·분석 등의 사항을 처리하며, 중앙 주무기관 소속 노동부 노동 및 산업 안전 및 위생 연구소 또는 그 밖의 학술·연구기구에 필요한 기술적인 협조를 제공할 수 있다.
第二十五條 勞動檢查員對於事業單位之檢查結果，應報由所屬勞動檢查機構依法處理；其有違反勞動法令規定事項者，勞動檢查機構並應於十日內以書面通知事業單位立即改正或限期改善，並副知直轄市、縣（市）主管機關督促改善。對公營事業單位檢查之結果，應	제 25 조 근로조사원이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 근로조사의 결과는 이를 보고받은 소속 근로조사기구가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노동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근로조사기구는 10 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당 사업장이 즉시 시정하거나 정하

另副知其目的事業主管機關督促其改善。	여진 기한 안에 개선하도록 하고, 직할시·현 (시) 주무기관에도 알려서 시정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공영사업장에 대한 근로조사 결과는 해당 목적사업 주무기관에 별도로 알려서 시정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事業單位對前項檢查結果，應於違規場所顯明易見處公告七日以上。	사업장은 앞의 근로조사 결과에 대한 공고를 위반 사항이 발견된 장소 안의 명확하게 잘 보이는 곳에 7 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第二十六條 左列危險性工作場所，非經勞動檢查機構審查或檢查合格，事業單位不得使勞工在該場所作業：	제 26 조 위험한 작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 근로조사기구의 심사 또는 조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은 근로자를 다음에 해당하는 위험한 작업 장소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從事石油裂解之石化工業之工作場所。	1. 석유화학공업 플랜트에서 석유를 정제하는 장소
二、農藥製造工作場所。	2. 농약 제조 작업 장소
三、爆竹煙火工廠及火藥類製造工作場所。	3. 폭죽 공장 및 화약류 제조 작업 장소
四、設置高壓氣體類壓力容器或蒸汽鍋爐，其壓力或容量達中央主管機關規定者之工作場所。	4. 고압 기체류 압력 용기 또는 증기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압력 또는 용량이 중앙주무기관이 규정한 기준에 도달하는 작업 장소
五、製造、處置、使用危險物	5. 위험물 및 유해물을 제조·

、有害物之數量達中央主管機關規定數量之工作場所。 六、中央主管機關會商目的事業主管機關指定之營造工程之工作場所。 七、其他中央主管機關指定之工作場所。 前項工作場所應審查或檢查之事項，由中央主管機關定之。	설치·사용하는 수량이 중앙 주무기관이 규정한 기준에 도달하는 작업 장소 6. 중앙 주무기관이 목적사업 주무기관과 논의하여 건축 공정 장소로 지정한 작업 장소 7. 중앙 주무기관이 지정하는 그 밖의 작업 장소 앞 항에서 말하는 작업 장소에 대한 심사 또는 조사 사항은 중앙 주무기관이 정한다.
第二十七條 勞動檢查機構對事業單位工作場所發生重大職業災害時，應立即指派勞動檢查員前往實施檢查，調查職業災害原因及責任；其發現非立即停工不足以避免職業災害擴大者，應就發生災害場所以書面通知事業單位部分或全部停工。	제 27 조 근로조사기구는 사업장의 작업 장소에서 심각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근로조사원을 파견하여 곧바로 근로조사를 실시하고, 산업재해 원인 및 책임을 조사한다. 조업을 중지하지 아니하고는 산업재해가 더 커지는 위험을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 발견되는 경우 산업재해 발생 장소 일부 또는 전부의 조업을 중지하도록 사업장에 통지하여야 한다.
第二十八條 勞動檢查機構指派勞動檢查員對各事業單位工作場所實施安全衛生檢查時，發現勞工有立即發生危險之虞，得就該場所以書面通知事業單位逕予先行停工。	제 28 조 근로조사기구가 근로조사원을 파견하여 각 사업장 작업 장소에 대하여 산업 안전 및 위생 근로조사를 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前項有立即發生危險之虞之情事，由中央主管機關定之。	우려가 발견되는 경우 사업장이 우선적으로 곧바로 해당 장소를 조업 정지 조치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앞 항에서 말하는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우려에 관한 상황은 중앙 주무기관이 정한다.
第二十九條 勞動檢查員對事業單位未依勞動檢查機構通知限期改善事項辦理，而有發生職業災害之虞時，應陳報所屬勞動檢查機構；勞動檢查機構於認有必要時，得以書面通知事業單位部分或全部停工。	**제 29 조** 근로조사원은 정하여진 기간 안에 시정하도록 근로조사기구가 통지한 사항을 사업장이 시정하지 아니하여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속 근로조사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근로조사기구는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경우 작업 장소 일부 또는 전부의 조업을 중지하도록 사업장에 통지할 수 있다.
第三十條 經依第二十七條至第二十九條規定通知停工之事業單位，得於停工之原因消滅後，向勞動檢查機構申請復工。	**제 30 조** 제 27 조에서 제 29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업 중지를 통지받은 사업장은 조업 중지 원인이 소멸된 뒤에는 근로조사기구에 조업 재개 및 생산회복 신청을 할 수 있다.
第三十一條 代行檢查員進入事業單位實施檢查時，應主動出示代行檢查證，	**제 31 조** 근로조사대행원은 사업장에 들어가서 조사를 진행하는 때에 먼저

並告知雇主指派人員在場。	근로조사대행증을 제시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파견하는 자가 현장에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代行檢查員於實施危險性機械或設備之檢查後，合格者，應即於原合格證上簽署，註明有效期限；不合格者，應告知事業單位不合格事項，並陳報所屬代行檢查機構函請勞動檢查機構依法處理。	근로조사대행원은 위험한 기계 및 설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가 합격인 경우 원래의 합격증에 서명하고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적고, 그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 불합격 사항을 해당 사업장에 고지하고 소속 근로조사대행기구에도 서면으로 보고하여 근로조사기구가 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前項不合格之危險性機械或設備，非經檢查合格，不得使用。	조사 결과가 다시 합격으로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고, 앞 항에서 말하는 불합격 판정을 받은 위험한 기계 및 설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一項之代行檢查證，由中央主管機關製發之。	제 1 항에서 말하는 근로조사대행증은 중앙 주무기관이 제작하여 발급한다.
第三十二條 事業單位應於顯明而易見之場所公告左列事項：	제 32 조 사업장은 명확하게 잘 보이는 곳에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一、受理勞工申訴之機構或人員。	1. 근로자 고충처리를 접수하는 기관 명칭 또는 담당자 성명
二、勞工得申訴之範圍。	2. 근로자가 고충처리를 신고할 수 있는 범위
三、勞工申訴書格式。	3. 근로자 고충처리 신고서 양

	식
四、申訴程序。 前項公告書由中央主管機關定之。	4. 근로자 고충처리 절차 앞 항에서 말하는 공고문은 중앙주무기관이 정한다.
第三十三條 勞動檢查機構於受理勞工申訴後，應儘速就其申訴內容派勞動檢查員實施檢查，並應於十四日內將檢查結果通知申訴人。	제 33 조 근로조사기구는 근로자 고충처리를 접수한 뒤 곧바로 근로조사원을 파견하여 최선을 다하여 신속하게 고충처리의 내용에 대한 근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고, 14 일 안에 근로조사의 결과를 고충처리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勞工向工會申訴之案件，由工會依申訴內容查證後，提出書面改善建議送事業單位，並副知申訴人及勞動檢查機構。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고충처리 내용을 안건으로 제출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고충처리 내용을 조사한 뒤에 시정 및 건의 사항을 사업장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고충처리 신고자 및 근로조사기구에게도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事業單位拒絕前項之改善建議時，工會得向勞動檢查機構申請實施檢查。	사업장이 앞 항에서 말하는 시정 및 건의 사항을 받아들이기 거부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근로조사기구에 근로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事業單位不得對勞工申訴人終止勞動契約或為其他不利勞工之處分。	사업장은 고충처리 신고를 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한 그 밖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勞動檢查機構受理勞工申訴必須保持秘密，不得洩漏勞工申訴人	근로조사기구는 접수된 근로자 고충처리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身分。	유지하여야 하며, 고충처리를 신고한 근로자의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六章 罰則	제 6 장 벌칙
第三十四條 有左列情形之一者，處三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科或併科新臺幣(TWD)十五萬元以下罰金： 一、違反第二十六條規定，使勞工在未經審查或檢查合格之工作場所作業者。 二、違反第二十七條至第二十九條停工通知者。 法人之代表人、法人或自然人之代理人、受僱人或其他從業人員，因執行業務犯前項之罪者，除處罰其行為人外，對該法人或自然人亦科以前項之罰金。	제 34 조 다음의 상황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단기징역에 처하고, 신 타이완 달러(TWD) 15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다. 1. 제 26 조 규정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심사 또는 조사 결과 합격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일하도록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키는 경우 2. 제 27 조에서 제 29 조까지의 규정에서 말하는 조업 정지 통지를 위반하는 경우 법인 대표·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고용된 자·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 집행으로 한 행위가 앞 항에서 말하는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그 행위자를 처벌하고, 해당 법인 또는 자연인도 앞 항에서 규정된 벌금에 처한다.
第三十五條 事業單位或行為人有下列情形之一者，處新臺幣(TWD)三萬元以上十五萬元以下罰鍰，並得按次	제 35 조 사업장 또는 행위자가 다음의 상황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 타이완 달러(TWD) 3 만 위안

處罰： 一、違反第十四條第一項規定。 二、違反第十五條第二項規定。	이상 15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누적되는 위반횟수에 따라 처벌한다. 1. 제 14 조제 1 항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제 15 조제 2 항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第三十六條 有左列情形之一者，處新臺幣(TWD)三萬元以上六萬元以下罰鍰： 一、事業單位違反第二十五條第二項或第三十二條第一項規定者。 二、有關團體違反第七條第二項規定者。	**제 36 조** 다음의 상황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 타이완 달러(TWD) 3 만 위안 이상 6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업장이 제 25 조제 2 항 또는 제 32 조제 1 항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유관단체가 제 7 조제 2 항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第三十七條 依本法所處之罰鍰，經通知而逾期不繳納者，移送法院強制執行。	**제 37 조** 이 법에 따라 처하는 벌금을 통지받은 기한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으로 이송하여 강제집행을 하도록 한다.
第七章 附則	**제 7 장 부칙**
第三十八條 本法修正施行前已依法令設立之屬第二十六條所定危險性工作場所，應於中央主管機關指定期限	**제 38 조** 이 법의 개정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작업 장소가 제 26 조에서 규정된 위험한 작업 장소에 해당

內，申請該管勞動檢查機構審查或檢查；逾期不辦理或審查、檢查不合格，而仍使勞工在該場所作業者，依第三十四條規定處則。	하는 경우 중앙 주무기관이 지정하는 기한 안에 해당 사업장에 대한 근로조사를 관리하는 근로조사기구에 심사 또는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된 기한 안에 심사 또는 조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심사 또는 조사 결과가 불합격인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해당 장소에서 일하도록 작업을 시키는 경우 제 34 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第三十九條 本法施行細則，由中央主管機關定之。	제 39 조 이 법의 시행세칙은 중앙 주무기관이 정한다.
第四十條 本法自公布日施行。	제 40 조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